

안전은 권리입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이것만은 지킵시다!

- ◎ 추락은 곧 사망! 작업발판은 내 생명!
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→ 추락 사망
- ◎ 작업 전 안전점검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
- ◎ 작업시작전 10분이면 우리현장 안전보건교육 OK
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시
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(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)

[사업주 등의 의무] 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

-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따라야 함

[보호구 지급 및 착용]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

-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근로자의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함
>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[작업발판 설치]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

-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 시 비계조립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
>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[안전난간 등 설치]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

-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,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함
>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[산업재해 발생 보고]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

-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, 질병자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
-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유선 등 보고
> 위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(중대재해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)

[화재위험작업시 사업주 순회점검]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

-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기사용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불꽃이 우려가 있는 작업시 순회점검 및 소화기 비치

※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문의 : 042-825-0804